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
----------	-----

제출년월일 : 1996.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토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제정·시행에따라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일부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토양오염 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 요인이 점증되고 있어
- 토양오염의 효율적·사전예방관리와 오염토양에 대한 대책강구 및 개선사업 추진등 토양환경보전업무를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적극추진하기 위하여
-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신고, 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등에 관하여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임

□ 의안전문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체 : 별 첨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권한위임사무중 환경관리과 소관제18호 다음에 제19호내지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관 리 과	1-18	( 생 락 )	
	19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20	토지등의수용및사용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21	타인토지에의출입등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22	손실보상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
	2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2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대한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25	출입검사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26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27	대책계획의수립·시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
	28	오염토양개선사업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
	29	토지이용등의 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
	30	행위 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
	31	대집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32	과태료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